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도시관리계획(산격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정책관, 북구 도시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20일

# 대 구 광 역 시 장

## I.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 1. 산격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14	산격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산격동 1544번지 일원	837,721.1	-	837,721.1	

### 2. 산격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변경있음)

#### (1) 용도지역·지구,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유통상업지역	837,721.1	-	837,721.1	100.0	

나. 용도지구(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제한내용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38	방화지구	산격종합 유통단지	-	837,721.1	1993. 9.17 (대고 제172호)	

다.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37,721.1	100.0	
전 시 컨 벤 셴 셴 터 용 지	79,965.9	9.6	
기 업 관 용 지	56,449.2	6.7	
도 매 단 지 용 지	165,102.6	19.7	
물 류 단 지 용 지	160,588.3	19.2	
지 원 시 설 용 지	50,470.8	6.0	
공 공 기 타 용 지	325,144.3	38.8	
도 로	274,763.5	32.8	
주 차 장	18,022.8	2.1	
공 원	13,488.1	1.6	
녹 지	18,869.9	2.3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변경)고시 상 토지이용계획 면적 오기 정정(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283호(2019. 1. 10))  
 - 공공기타용지 : A=325,144.2㎡ → 325,144.3㎡, (증) 0.1㎡

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① 도 로(변경없음)

■ 도로총괄표

등 급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노선수	연 장	노선수	연 장	노선수	연 장
합 계	35	14,249 (11,250)	16	6,044 (4,121)	10	3,771 (3,262)	9	4,434 (3,867)
광 로	3	2,016 (2,016)	-	-	1	1,488 (1,488)	2	528 (528)
대 로	6	5,294 (3,828)	1	2,090 (824)	1	306 (106)	4	2,898 (2,898)
중 로	15	4,616 (4,105)	11	3,489 (2,978)	4	1,127 (1,127)	-	-
소 로	11	2,323 (1,301)	4	465 (319)	4	850 (541)	3	1,008 (441)

주) ( )는 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35개 노선					14,249 (11,250)						
소계	3개 노선					2,016						
기정	광로	2	10	50	집산 도로	1,488	북구 산격동 대로 1-4	북구 산격동 대로 1-39	일반 도로	유통 단지	1993. 9.17 (대고 제172호)	
〃	〃	3	6	40	〃	274	북구 산격동 광로 2-10	북구 산격동 대로 3-33	〃	〃	〃	
〃	〃	3	8	40	〃	254	북구 산격동 광로 2-10	북구 산격동 대로 3-32	〃	〃	1993.11. 3 (대고 제200호)	
소계	6개 노선					5,294 (3,828)						
기정	대로	1	39	35	보조간선 도로	2,090 (824)	14호광장	북구 산격동 대로 2-46	일반 도로	유통 단지	1965. 2. 2 (건고 제387호)	
〃	〃	2	68	30	집산 도로	306 (106)	북구 산격동 대로 3-33	금호강좌안 대로 1-40	〃	금호강 좌안	1993. 9.17 (대고 제172호)	
〃	〃	3	32	25	〃	1,250	북구 산격동 광로 2-10	북구 검단동 대로 1-39	〃	유통 단지	1993.11. 3 (대고 제200호)	
〃	〃	3	33	25	〃	1,154	북구 산격동 광로 2-10	북구 검단동 대로 1-39	〃	〃	〃	
〃	〃	3	34	25	〃	233	북구 산격동 광로 2-10	북구 산격동 대로 3-32	〃	〃	〃	
〃	〃	3	35	25	〃	261	북구 산격동 광로 2-10	북구 산격동 대로 3-33	〃	〃	〃	
소계	15개 노선					4,616 (4,105)						
기정	중로	1	123	20~25	집산 도로	620 (109)	북구 산격동 대로 1-39	북구 산격동 대로 3-32	일반 도로	유통 단지	1993.11. 3 (대고 제200호)	
〃	〃	1	125	20	〃	289	북구 산격동 광로 2-10	북구 산격동 대로 3-32	〃	〃	〃	
〃	〃	1	126	20	〃	255	북구 산격동 광로 2-10	북구 산격동 대로 3-33	〃	〃	〃	
〃	〃	1	127	20	〃	163	북구 산격동 광로 3-6	북구 산격동 중로 1-126	〃	〃	〃	
〃	〃	1	128	20	〃	584	북구 산격동 광로 3-6	북구 검단동 대로 1-39	〃	〃	〃	
〃	〃	1	129	20	〃	129	북구 산격동 대로 3-33	북구 산격동 중로 1-128	〃	〃	〃	
〃	〃	1	130	20	〃	127	북구 검단동 대로 3-33	북구 검단동 중로 1-128	〃	〃	〃	

주) ( )는 구역내 연장임

\* 계속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31	20	집산 도로	462	북구 산격동 대로3-32	북구 산격동 중로1-132	일반 도로	유통 단지	1993.11. 3 (대고 제200호)	
〃	〃	1	132	20	〃	253	북구 산격동 광로 2-10	북구 산격동 대로 3-32	〃	〃	〃	
〃	〃	1	133	20	〃	542	북구 검단동 광로 2-10	북구 산격동 대로 1-39	〃	〃	〃	
〃	〃	1	134	20	〃	65	북구 산격동 중로 1-133	북구 산격동 중로 2-157	〃	〃	〃	
〃	〃	2	156	15	〃	250	북구 산격동 광로 2-10	북구 산격동 대로 3-33	〃	〃	〃	
〃	〃	2	157	15	〃	376	북구 산격동 대로 3-32	북구 산격동 대로 1-39	〃	〃	〃	
〃	〃	2	204	15	〃	78	북구 산격동 대로 2-68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 경계	〃	〃	1995. 9.26 (대고 제184호)	
〃	〃	2	253	15	〃	423	북구 산격동 중로1-133	북구 산격동 중로1-133	〃	〃	1995. 5.27 (대고 제90-1호)	
소계	11개 노선					2,323 (1,301)						
기정	소로	1	북14	10	국지 도로	166 (20)	북구 산격동 중로2-156	북구 산격동 349-4	일반 도로	유통 단지	1974. 9.23 (경고 제212호)	
〃	소로	1	북32	10	〃	157	북구 산격동 대로 3-32	북구 산격동 중로1-125	〃	〃	1995. 5.16 (대고 제90호)	
〃	소로	1	북33	10	〃	71	북구 산격동 중로1-131	북구 산격동 소로1-북32	〃	〃	〃	
〃	소로	1	북34	10	〃	71	북구 산격동 중로1-131	북구 산격동 소로1-북32	〃	〃	〃	
〃	소로	2	북82	8	〃	188	북구 산격동 대로3-33	북구 산격동 573	〃	〃	1993.11. 3 (대고 제200호)	
〃	소로	2	북83	8	〃	176 (22)	북구 산격동 대로3-33	북구 산격동 1477-17	〃	〃	1974. 9.23 (경고 제212호)	
〃	소로	2	북91	8	〃	309	북구 산격동 대로 3-32	북구 산격동 573	〃	〃	1993.11. 3 (대고 제200호)	
〃	소로	2	북102	8	〃	177 (22)	북구 산격동 대로3-33	북구 산격동 1477-9	〃	〃	1974. 9.23 (경고 제212호)	
〃	소로	3	북50	6	〃	593 (38)	북구 산격동 소로2-북97	북구 산격동 소로3-북51	〃	〃	〃	
〃	소로	3	북116	6	〃	198	북구 산격동 소로1-북14	북구 산격동 소로2-북102	〃	〃	1993.11. 3 (대고 제200호)	
〃	소로	3	북75	6	보행자 전용도로	217 (205)	북구 산격동 대로 1-5	북구 산격동 소로3-북50	특수 도로	〃	1974. 9.23 (경고 제212호)	

주) ( )는 구역내 연장임

②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개소		18,022.8	-	18,022.8	1993.11. 3 (대고 제200호)	
기정	1	유통단지 제1호주차장	산격동 1622	2,790.9	-	2,790.9		
〃	2	유통단지 제2호주차장	산격동 1625	2,912.5	-	2,912.5		
〃	3	유통단지 제3호주차장	산격동 1616	1,636.5	-	1,636.5		
〃	4	유통단지 제4호주차장	산격동 1640	2,740.4	-	2,740.4		
〃	5	유통단지 제5호주차장	산격동 1631	2,648.0	-	2,648.0		
〃	7	유통단지 제7호주차장	산격동 1576	849.1	-	849.1		
〃	8	유통단지 제8호주차장	산격동 1671	1,635.2	-	1,635.2		
〃	9	유통단지 제10호주차장	산격동 1739	2,810.2	-	2,810.2		

2) 공간시설(변경없음)

① 녹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개소			18,869.9	-	18,869.9	1993.11. 3 (대고 제200호)		
기정	1	유통단지 녹지	완충녹지	산격동 1623, 1544, 1551	2,075.6	-	2,075.6			
	2		경관녹지		산격동 1627	623.4	-			623.4
	3				산격동 1744	540.2	-			540.2
	4				산격동 1633	14,539.6	-			14,539.6
	6				산격동 1679	370.3	-			370.3
	7				산격동 1680	136.5	-			136.5
	8				산격동 1685	584.3	-			584.3

②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0	신기공원	근린공원	산격동 1620	13,488.1	-	13,488.1	1993.11. 3 (대고 제200호)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① 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9	소방·파출소	공공청사	산격동 1683, 1684	1,456.7	-	1,456.7	1993.11. 3 (대고 제200호)	

② 문화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유1	대구전시컨벤션센터	문화시설	산격동 1706 일원	36,951.5	-	36,951.5	2017.12.20 (대고 제20호)	

■ 문화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sup>2</sup> )				비 고
	계	전시시설부지	녹지부지	주차장부지	
기 정	36,951.5	23,450.5	4,012.2	9,488.8	

○ 건축계획

구 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높이	비 고
기 정	70이하	220이하	5층 이하	

○ 세부시설 계획

구 분	도면번호	세부시설명	면 적(m <sup>2</sup> )			건축규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6,951.5	-	36,951.5		
전시시설부지	-	전시시설부지	23,450.5	-	23,450.5	5층이하	
녹지부지	-	녹지부지	4,012.2	-	4,012.2		
주차장부지	-	주차장부지	9,488.8	-	9,488.8		

## (2)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1) 전시컨벤션센터용지(변경없음)

① 대구전시컨벤션센터 및 부대시설(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79,965.9	
대구전시 컨벤션센터 및 부대시설	1	북구 산격동 1676	20,862.2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2	북구 산격동 1678 일원	22,152.2	
	3	북구 산격동 1706 일원	36,951.5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변경)고시 상 가구 및 획지 면적 오기 정정(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283호(2019. 1. 10))

- 합계 : A=79,966.0m<sup>2</sup> → 79,965.9m<sup>2</sup> 감) 0.1m<sup>2</sup>

- 획지번호③ : A=36,951.6m<sup>2</sup> → 36,951.5m<sup>2</sup> 감) 0.1m<sup>2</sup>

2) 기업관용지(변경없음)

① 대기업관(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3,969.6	1개 가구
대기업관①	-	북구 산격동 1575	3,969.6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② 중기업관(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17,307.8	2개 가구
중기업관③	소 계		11,487.7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707	1,682.6	
	2	북구 산격동 1709	497.2	
	3	북구 산격동 1710	284.0	
	4	북구 산격동 1775	1,318.3	
	5	북구 산격동 1777	428.9	
	6	북구 산격동 1778	1,317.7	
	7	북구 산격동 1779	1,317.0	
	8	북구 산격동 1780	3,000.7	
	9	북구 산격동 1781	1,641.3	
중기업관④	소 계		5,820.1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712	661.8	
	2	북구 산격동 1713	662.3	
	3	북구 산격동 1715	517.8	
	4	북구 산격동 1718	926.0	
	5	북구 산격동 1784	660.9	
	6	북구 산격동 1785	143.2	
	7	북구 산격동 1786	660.7	
	8	북구 산격동 1787	660.6	
	9	북구 산격동 1788	414.0	
	10	북구 산격동 1788-1	512.8	

③ 지역기업관(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35,171.8	6개 가구
지역기업관①	소 계		7,146.7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729	825.6	
	2	북구 산격동 1730	827.3	
	3	북구 산격동 1731	825.3	
	4	북구 산격동 1732	824.0	
	5	북구 산격동 1733	659.5	
	6	북구 산격동 1734	660.0	
	7	북구 산격동 1735	660.2	
	8	북구 산격동 1736	659.6	
	9	북구 산격동 1737	594.1	
	10	북구 산격동 1738	611.1	
지역기업관②	소 계		5,788.3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719	90.5	
	2	북구 산격동 1720	332.7	
	3	북구 산격동 1721	330.2	
	4	북구 산격동 1722	330.5	
	5	북구 산격동 1723	330.3	
	6	북구 산격동 1724	330.3	
	7	북구 산격동 1725	330.3	
	8	북구 산격동 1726 북구 산격동 1800	429.3	
	9	북구 산격동 1727	479.2	
	10	북구 산격동 1790	240.7	
	11	북구 산격동 1791	330.7	
	12	북구 산격동 1794	330.7	
	13	북구 산격동 1795	330.5	
	14	북구 산격동 1797	330.6	
	15	북구 산격동 1798	330.8	
	16	북구 산격동 1799	429.8	
17	북구 산격동 1802	481.2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지역기업관③	소 계		5,912.2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804	335.8	
	2	북구 산격동 1805	663.0	
	3	북구 산격동 1806	334.3	
	4	북구 산격동 1807	334.4	
	5	북구 산격동 1808	661.7	
	6	북구 산격동 1809	334.4	
	7	북구 산격동 1810	334.5	
	8	북구 산격동 1811	596.0	
	9	북구 산격동 1812	334.8	
	10	북구 산격동 1813	434.6	
	11	북구 산격동 1814	496.9	
	12	북구 산격동 1815	520.3	
	13	북구 산격동 1816	531.5	
지역기업관④	소 계		10,363.8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740	1,670.9	
	2	북구 산격동 1741	1,356.1	
	3	북구 산격동 1742	581.9	
	4	북구 산격동 1822	1,667.9	
	5	북구 산격동 1823	1,001.0	
	6	북구 산격동 1823-1	1,000.9	
	7	북구 산격동 1824	1,000.3	
	8	북구 산격동 1825	1,084.3	
	9	북구 산격동 1826	671.2	
	10	북구 산격동 1836	329.3	
지역기업관⑤	소 계		4,302.7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658	600.8	
	2	북구 산격동 1659	929.9	
	3	북구 산격동 1660	929.9	
	4	북구 산격동 1661	602.5	
	5	북구 산격동 1662	619.8	
	6	북구 산격동 1663	619.8	
지역기업관⑥	소 계		1,658.1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637	552.0	
	2	북구 산격동 1638	552.7	
	3	북구 산격동 1639	553.4	

### 3) 도매단지용지(변경있음)

#### ① 섬유패션타운(변경있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37,876.4	2개 가구
섬유패션 타운①	섬 유 제품관	-	북구 산격동 1667	19,743.5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섬유패션 타운②	일 반 의류관	-	북구 산격동 1668	18,132.9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② 산업용재관(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산업용재관	-	북구 산격동 1629	70,141.9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③ 전자상가(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전자상가	-	북구 산격동 1626	10,173.4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④ 전자관(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전자관	-	북구 산격동 1621	27,875.6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⑤ 전기재료관(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전기재료관	-	북구 산격동 1665	9,917.2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⑥ 전기조명관(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전기조명관	-	북구 산격동 1666	9,118.1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4) 물류단지용지(변경없음)

##### ① 일반물류(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75,518.6	7개 가구
일반물류①	소 계		16,527.8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578	8,264.2	
	2	북구 산격동 1579	4,131.8	
	3	북구 산격동 1579-1	2,228.1	
	4	북구 산격동 1579-2	1,903.7	
일반물류②	-	북구 산격동 1553	1,603.4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일반물류③	소 계		6,837.3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555	3,327.7	
	2	북구 산격동 1556	1,119.0	
	3	북구 산격동 1557	1,728.9	
	4	북구 산격동 1558	661.7	
일반물류④	소 계		8,979.3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545	1,305.0	
	2	북구 산격동 1545-1	531.3	
	3	북구 산격동 1546	1,827.1	
	4	북구 산격동 1547	1,824.3	
	5	북구 산격동 1548	1,793.9	
	6	북구 산격동 1549	679.0	
	7	북구 산격동 1549-1	1,018.7	
일반물류⑤	소 계		18,784.3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608	7,914.9	
	2	북구 산격동 1609	1,622.9	
	3	북구 산격동 1610	1,615.7	
	4	북구 산격동 1611	1,442.6	
	5	북구 산격동 1612	1,442.0	
	6	북구 산격동 1613	1,442.5	
	7	북구 산격동 1614	3,303.7	
일반물류⑥	-	북구 산격동 1580	13,220.7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일반물류⑦	소 계		9,565.8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604	3,354	
	2	북구 산격동 1605	2,858.1	
	3	북구 산격동 1606	3,353.7	

② 철강물류(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57,016.7	3개 가구
철강물류①	소 계		22,990.2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583	680.6	
	2	북구 산격동 1584	671.9	
	3	북구 산격동 1585	683.1	
	4	북구 산격동 1586	683.0	
	5	북구 산격동 1587	683.6	
	6	북구 산격동 1588	683.6	
	7	북구 산격동 1589	922.0	
	8	북구 산격동 1590	1,715.3	
	9	북구 산격동 1591	1,730.7	
	10	북구 산격동 1592	2,640.4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1	북구 산격동 1593	1,716.7	
	12	북구 산격동 1594	1,711.0	
	13	북구 산격동 1595	1,724.3	
	14	북구 산격동 1596	1,732.9	
	15	북구 산격동 1597	920.7	
	16	북구 산격동 1598	682.0	
	17	북구 산격동 1599	684.2	
	18	북구 산격동 1600	682.4	
	19	북구 산격동 1601	686.6	
	20	북구 산격동 1602	671.3	
21	북구 산격동 1603	683.9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철강물류②	소 계		17,106.2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560	789.5	
	2	북구 산격동 1561	715.8	
	3	북구 산격동 1562	715.2	
	4	북구 산격동 1563	1,076.5	
	5	북구 산격동 1564	254.4	
	6	북구 산격동 1565	1,837.3	
	7	북구 산격동 1566	853.3	
	8	북구 산격동 1567	683.4	
	9	북구 산격동 1568	680.2	
	10	북구 산격동 1569	1,198.5	
	11	북구 산격동 1570	1,012.8	
	12	북구 산격동 1571	118.9	
	13	북구 산격동 1572	422.8	
	14	북구 산격동 1747	1,218.6	
	15	북구 산격동 1748	682.6	
	16	북구 산격동 1749	683.1	
	17	북구 산격동 1750	855.4	
	18	북구 산격동 1751	1,577.1	
	19	북구 산격동 1752	57.4	
	20	북구 산격동 1571	718.0	
	21	북구 산격동 1571	598.6	
22	북구 산격동 1755	356.8		
철강물류③	소 계		16,920.3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757	789.7	
	2	북구 산격동 1758	791.0	
	3	북구 산격동 1759	769.2	
	4	북구 산격동 1760	928.5	
	5	북구 산격동 1761	924.5	
	6	북구 산격동 1762	915.0	
	7	북구 산격동 1763	1,694.4	
	8	북구 산격동 1764	1,567.1	
	9	북구 산격동 1765	1,575.6	
	10	북구 산격동 1766	1,402.9	
	11	북구 산격동 1767	913.5	
	12	북구 산격동 1768	909.2	
	13	북구 산격동 1769	906.5	
	14	북구 산격동 1770	947.6	
	15	북구 산격동 1771	943.9	
	16	북구 산격동 1772	941.7	

③ 우편기계화물류(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28,053.0	
우편기계화물류	1	북구 산격동 1574	19,849.9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2	북구 산격동 1574	8,203.1	

5)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① 업무편익시설(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37,680.6	9개 가구
업무편익시설①	-	북구 산격동 1552	1,917.1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업무편익시설②	소 계		2,314.7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617	478.5	
	2	북구 산격동 1617-1	678.8	
	3	북구 산격동 1618	1,157.4	
업무편익시설③	-	북구 산격동 1581	1,058.2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업무편익시설④	소 계		2,617.0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650	323.5	
	2	북구 산격동 1651	323.3	
	3	북구 산격동 1652	330.2	
	4	북구 산격동 1653	330.1	
	5	북구 산격동 1654	329.9	
	6	북구 산격동 1655	330.2	
	7	북구 산격동 1656	325.1	
	8	북구 산격동 1657	324.7	
업무편익시설⑤	소 계		2,603.3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642	326.0	
	2	북구 산격동 1643	307.8	
	3	북구 산격동 1644	330.1	
	4	북구 산격동 1645	330.8	
	5	북구 산격동 1646	330.6	
	6	북구 산격동 1647	330.0	
	7	북구 산격동 1648	324.1	
	8	북구 산격동 1649	323.9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업무편의시설⑥	소 계		9,609.4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674	8,452.3	
	2	북구 산격동 1675	1,157.1	
업무편의시설⑦	소 계		1,340.8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682	893.8	
	2	북구 산격동 1682-1	392.4	
	3	북구 산격동 1681	54.6	
업무편의시설⑨	소 계		10,312.9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1	북구 산격동 1817	9,143.3	
	2	북구 산격동 1818	350.4	
	3	북구 산격동 1819	819.2	
업무편의시설⑩	1	북구 산격동 1630	5,907.2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②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패션디자인개발 지원센터	-	북구 산격동 1670	4,114.8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③ 관리사무소(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관리사무소	-	북구 산격동 1619	1,001.1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④ 소방·경찰파출소(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1,456.7	
소방경찰파출소	1	북구 산격동 1683	1,125.6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 인접필지와 합필가능
	2	북구 산격동 1684	331.1	

⑤ 변전소(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변전소	-	북구 산격동 1635	3,058.1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⑥ 패션지원시설(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패션지원시설	-	북구 산격동 1672	3,159.5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6) 공공기타용지(변경없음)

① 주차장(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18,022.8	
주차장①	-	북구 산격동 1622	2,790.9	· 기존필지이하 분할금지
주차장②	-	북구 산격동 1625	2,912.5	
주차장③	-	북구 산격동 1616	1,636.5	
주차장④	-	북구 산격동 1640	2,740.4	
주차장⑤	-	북구 산격동 1631	2,648.0	
주차장⑦	-	북구 산격동 1576	849.1	
주차장⑧	-	북구 산격동 1671	1,635.2	
주차장⑨	-	북구 산격동 1739	2,810.2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1) 전시컨벤션센터용지(변경없음)

① 대구전시컨벤션센터 및 부대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대구전시 컨벤션센터 및 부대시설-1 (기존전시장)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다목(유원 시설업의 시설)</li> </ul>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220% 이하
		건폐율		70% 이하
		높 이		5층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대구전시 컨벤션센터 및 부대시설-2 (기존전시장)	용도	지정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220% 이하	
	건폐율		7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대구전시 컨벤션센터 및 부대시설-3 (확장전시장)	용도	지정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의 문화시설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220% 이하
		건폐율		7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2) 기업관용지(변경있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대기업관 ① 중기업관 ③~④ 지역기업관 ①~⑥	용도	권장 용도	기정	다음 품목을 취급하는 상점, 소매점, 전시장 •섬유류, 기계류, 의약품, 의료기기, 가구, 건축자재, 인쇄출판, 화장품, 문구 등 공산품 판매업 •정보서비스업체, 컴퓨터 산업 •농축산물 판매업 상기 취급품목업종의 부속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휴게음식점 제외), 다목(목욕장 제외), 라목, 마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일반음식점 제외), 다목, 라목(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제외), 마목(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제외), 바목 내지 자목, 카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매매장 ※ 단, 부속용도는 건축연면적의 50%미만
			변경	<input type="checkbox"/> 주용도 •다음 품목을 취급하는 상점, 소매점, 전시장 - 섬유류, 기계류, 의약품, 의료기기, 가구, 건축자재, 인쇄출판, 화장품, 문구 등 - 공산품 - 정보서비스, 컴퓨터 - 농축산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 나목의 1) ※ 단, 상기시설의 총면적은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50%초과 설치 <input type="checkbox"/> 부속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예식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라목, 마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가목(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나목, 마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input type="checkbox"/> 편의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제과점), 다목(목욕장 제외), 라목, 마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차목, 카목, 타목, 파목(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제외), 너목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620% 이하	
		건폐율	70% 이하	
		높 이	10층 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 3) 도매단지용지(변경있음)

#### ① 섬유제품관(변경있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기정	변경				
-	섬유 패션 타운 ①	섬유 제품관	용도	권장 용도	기정	<p>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섬유사, 원사 : 천연 및 화학사, 원단 등</li> <li>•침장, 침구류 : 이불, 요, 매트리스, 침대커버 등</li> <li>•실내장식 직물 : 커튼지, 카펫지, 섬유벽지 등</li> <li>•기타 섬유제품</li> <li>•패션소품 : 양산, 안경, 장갑, 양말, 모자, 신발, 수건, 넥타이</li> <li>•공예품류 : 공예품, 완구 등</li> <li>•운동, 경기용품 : 낚시도구, 등산장비, 운동 및 경기용품 등</li> </ul> <p>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li> </ul> <p>※ 단, 상기시설의 총면적은 건축연면적의 50%이상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기 취급품목업종의 부속용도 (창고시설)</li> </ul>
						<p>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장중 극장, 영화관</li> <li>•집회장중 회의장</li> <li>•전시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상층 또는 지하층 권장</li> <li>•지 상 층 중 조합 공동 소유의 코너 및 변(Side) 쪽 공간 권장</li> </ul>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문구, 의약품)</li> <li>•휴게음식점</li> <li>•이용원, 미용원, 세탁소</li> <li>•의원, 치과의원, 한의원</li> </ul>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음식점</li> <li>•금융업소 (1개소에 한함)</li> </ul>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장중 극장, 영화관</li> <li>•집회장중 예식장</li> <li>•전시장</li> </ul> <p>※ 단, 상기 각호의 총 시설면적은 건축연면적의 8%이내 허용</p>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기정	변경					
-	섬유 패션 타운 ①	섬유 제품관	용도	권장 용도	변경	전층권장	<input type="checkbox"/> 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 섬유사, 원사 : 천연 및 화학사, 원단 등 - 침장, 침구류 : 이불, 요, 매트리스, 침대커버 등 - 실내장식 직물 : 커튼지, 카펫지, 섬유벽지 등 - 기타 섬유제품 - 일반의류 : 기성복, 내의, 아동복, 기타 의류 - 패션소품 : 양산, 안경, 장갑, 양말, 모자, 신발, 수건, 넥타이 - 공예품류 : 공예품, 완구 등 - 운동, 경기용품 : 낚시도구, 등산장비, 운동 및 경기용품 등 ※ 단, 상기시설의 총면적은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50%초과 설치하며, 판매시설 중 일반의류는 주용도의 50%이내 허용 <input type="checkbox"/> 부속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자목 중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목 중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라목, 마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가목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 나목의 1)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input type="checkbox"/> 편의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목욕장 제외), 라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하목(금융업소), 너목 ※ 단, 상기 각호의 총 시설면적은 건축연면적의 8%이내 허용
				불허용도	기정	•타 공동관의 전층권장용도	
					변경	•타 공동관의 전층권장용도로 명기된 주용도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60% 이하		
				높 이	7층 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 공동관이란 섬유제품관, 일반의류관, 산업용재관, 전기재료관, 전기조명관, 전자관, 전자상가를 말함

② 일반의류관(변경있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기정	변경				
-	섬유 패션 타운 ②	일반 의류관	용도	권장 용도	기정	<p>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의류 : 기성복, 내의, 아동복, 기타 의류</li> <li>•패션소품 : 양산, 안경, 장갑, 양말, 모자, 신발, 수건, 넥타이</li> <li>•공예품류 : 공예품, 완구 등</li> <li>•운동, 경기용품 : 낚시도구, 등산장비, 운동 및 경기용품 등</li> <li>•실내장식 식물 : 카펫지, 섬유벽지 등</li> </ul> <p>※ 단, 상기시설의 총면적은 건축연면적의 50%이상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기 취급품목업종의 부속용도 (창고시설, 사무소)</li> </ul>
						<p>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장중 극장, 영화관</li> <li>•집회장중 회의장</li> <li>•전시장</li> </ul> <p>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상층 또는 지하층 권장</li> <li>•지 상 층 중 조합 공동 소유의 코너 및 변(Side) 쪽 공간 권장</li> </ul>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문구, 의약품)</li> <li>•휴게음식점</li> <li>•이용원, 미용원, 세탁소</li> <li>•의원, 치과의원, 한의원</li> </ul>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음식점</li> <li>•금융업소 (1개소에 한함)</li> </ul>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장중 극장, 영화관</li> <li>•집회장중 예식장</li> <li>•전시장</li> </ul> <p>※ 단, 상기 각호의 총 시설면적은 건축연면적의 8%이내 허용</p>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기정	변경						
-	섬유 패션 타운 ②	일반 이류관	용도	권장 용도	변경	<input type="checkbox"/> 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 섬유사, 원사 : 천연 및 화학사, 원단 등 - 침장, 침구류 : 이불, 요, 매트리스, 침대커버 등 - 실내장식 직물 : 커튼지, 카펫지, 섬유벽지 등 - 기타 섬유제품 - 일반의류 : 기성복, 내의, 아동복, 기타 의류 - 패션소품 : 양산, 안경, 장갑, 양말, 모자, 신발, 수건, 넥타이 - 공예품류 : 공예품, 완구 등 - 운동, 경기용품 : 낚시도구, 등산장비, 운동 및 경기용품 등 ※ 단, 상기시설의 총면적은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50%초과 설치하며, 판매시설 중 섬유사, 원사, 침장, 침구류, 실내장식직물 중 커튼지, 기타 섬유제품은 주용도의 50%이내 허용 <input type="checkbox"/> 부속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자목 중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목 중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라목, 마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1) (바닥면적 합계 3천㎡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가목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 나목의 1)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input type="checkbox"/> 편의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다목(목욕장 제외), 라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하목(금융업소), 너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은 전층권장 사항 ※ 단, 상기 각호의 총 시설면적은 건축연면적의 8%이내 허용		
						<input type="checkbox"/> 최상층 또는 지하층과 지상층 중 조합 공동 소유코너 및 변(Side)쪽 공간 권장		
						불허용도	기정	•타 공동관의 전층권장용도
							변경	•타 공동관의 전층권장용도로 명기된 주용도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60% 이하	
높 이	7층 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은 건축연면적 8%이내로 허용하며, 전층허용은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50%이상을 1인 업체가 운영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의 정기총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③ 산업용재관(변경있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 구	및 획 지 번호				
-	산업용재관	용도	권장 용도	기정	전층권장	<p>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계류 : 섬유기계 및 부품, 공작기계, 자동차부품, 기타 기계류</li> <li>•조립금속 : 플렌지, 베어링, 볼트, 금형, 기타 조립금속</li> <li>•공구류 등</li> </ul> <p>※ 단, 상기 시설의 총면적은 건축연면적의 50%이상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기 취급품목업종의 부속용도 (창고시설, 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층 권장</li> <li>•지 상 층 중 조합 공동 소유의 코너 및 변(Side) 쪽 공간 권장</li> </ul>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문구, 의약품)</li> <li>•휴게음식점</li> <li>•이용원, 미용원, 세탁소</li> <li>•의원, 치과의원, 한의원</li> </ul>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음식점</li> <li>•금융업소 (1개소에 한함)</li> </ul>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장중 극장, 영화관</li> <li>•집회장중 예식장</li> <li>•전시장</li> </ul> <p>4. 업무동은 전층권장 사항으로 제1호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2호의 금융업소와 사무소</p> <p>※ 단, 상기 각호의 총 시설면적은 업무동을 포함한 건축 연면적의 8%이내 허용</p>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산업용재관	용도	권장 용도	변경	전층권장	<input type="checkbox"/> 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 기계류 : 섬유기계 및 부품, 공작기계, 자동차부품, 기타 기계류 - 조립금속 : 플렌지, 베어링, 볼트, 금형, 기타 조립금속 - 공구류 등 ※ 단, 상기시설의 총면적은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50%초과 설치 <input type="checkbox"/> 부속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자목 중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목 중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예식장, 마권 장의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라목, 마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가목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 나목의 1)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 단, 상기시설은 2층 이상에 설치	
					• 지하층 과 지상층 중 조합공동소유코너 및 변(Side)쪽 공간 권장	<input type="checkbox"/> 편의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목욕장 제외), 라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하목(금융업소), 너목 •업무동은 전층권장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자목,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하목,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1) ※ 단, 상기 각호의 총 시설면적은 업무동을 포함한 건축 연면적의 8%이내 허용	
					불허용도	기정	•타 공동관의 전층권장용도
						변경	•타 공동관의 전층권장용도로 명기된 주용도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50% 이하	
					높 이	7층 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④ 전자관(변경있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전자관	용도	권장 용도	기정	전층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가전제품 : TV, 전축, 냉장고, 진공청소기 등 •통신기기 : 유·무선전화기, 모사전송기, 송수신안테나, 기타 통신기기 •전산기기 : 컴퓨터, 자기테이프, 정보프로그램, 반도체, 기타 전산기기 •사무용기기, 시계, 오락기 등 •오토바이, 자전거, 전기자동차부품 ※ 단, 상기 시설의 총면적은 건축연면적의 50%이상 설치 •상기 취급품목업종의 부속용도 (창고시설, 사무소, 전자제품 AS센터)
					지상3층 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중 극장, 영화관 •집회장중 회의장 •전시장
					•최상층 또는 지하층 권장  •지 상 층 중 조 합 공 동 소 유 의 코너 및 변(Side) 쪽 공간 권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문구, 의약품) •휴게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1개소에 한함)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중 극장, 영화관 •집회장중 예식장 •전시장 ※ 단, 상기 각호의 총 시설면적은 건축연면적의 8%이내 허용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 구 및 획 지 번호										
-	전자관	용도	권장 용도	변경	전층권장	<input type="checkbox"/> 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 가전제품 : TV, 전축, 냉장고, 진공청소기 등 - 통신기기 : 유·무선전화기, 모사전송기, 송·수신안테나, 기타 통신기기 - 전산기기 : 컴퓨터, 자기테이프, 정보프로그램, 반도체, 기타 전산기기 - 사무용기기, 시계, 오락기 등 - 오토바이, 자전거, 전기자동차부품 ※ 단, 상기시설의 총면적은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50%초과 설치 <input type="checkbox"/> 부속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자목 중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목 중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라목, 마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1) (바닥면적 합계 3천㎡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가목(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 나목의 1)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 단, 자동차 관련시설 중 마목은 지상층 중 1·2층에 한함					
						불허용도	기정	<input type="checkbox"/> 편의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목욕장 제외), 라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하목(금융업소), 너목 ※ 단, 상기 각호의 총 시설면적은 건축연면적의 8%이내 허용			
							변경	•타 공동관의 전층권장용도 •타 공동관의 전층권장용도로 명기된 주용도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70% 이하		
						높 이			7층 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⑤ 전자상가(변경있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전자상가	용도	권장 용도	기정	<p>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전제품 : TV, 전축, 냉장고, 진공청소기 등</li> <li>•통신기기 : 유·무선전화기, 모사전송기, 송수신안테나, 기타 통신기기</li> <li>•전산기기 : 컴퓨터, 자기테이프, 정보프로그램, 반도체, 기타 전산기기</li> <li>•사무용기기, 시계, 오락기 등</li> <li>•오토바이, 자전거, 전기자동차부품</li> </ul> <p>※ 단, 상기 시설의 총면적은 건축연면적의 50%이상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기 취급품목업종의 부속용도 (창고시설, 사무소, 전자제품 AS센터)</li> </ul>
					<p>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장중 극장, 영화관</li> <li>•집회장중 회의장</li> <li>•전시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상층 또는 지하층 권장</li> <li>•지 상 층 중 조합 공동 소유의 코너 및 변(Side) 쪽 공간 권장</li> </ul>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문구, 의약품)</li> <li>•휴게음식점</li> <li>•이용원, 미용원, 세탁소</li> <li>•의원, 치과의원, 한의원</li> </ul>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음식점</li> <li>•금융업소 (1개소에 한함)</li> </ul>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장중 극장, 영화관</li> <li>•집회장중 예식장</li> <li>•전시장</li> </ul> <p>※ 단, 상기 각호의 총 시설면적은 건축연면적의 8%이내 허용</p>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전자상가	용도	권장 용도	변경	전층권장		
					<input type="checkbox"/> 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 가전제품 : TV, 전축, 냉장고, 진공청소기 등 - 통신기기 : 유무선전화기, 모사전송기, 송수신안테나, 기타 통신기기 - 전산기기 : 컴퓨터, 자기테이프, 정보프로그램, 반도체, 기타 전산기기 - 사무용기기, 시계, 오락기 등 - 오토바이, 자전거, 전기자동차부품 ※ 단, 상기시설의 총면적은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50%초과 설치 <input type="checkbox"/> 부속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자목 중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목 중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예식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라목, 마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가목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 나목의 1)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 단, 상기시설은 2층 이상에 설치		
					•지 하 층 과 지상층 중 조합공동 소유코너 및 변(Side)쪽 공간 권장	<input type="checkbox"/> 편의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목욕장 제외), 라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하목(금융업소), 너목 ※ 단, 상기 각호의 총 시설면적은 건축연면적의 8%이내 허용	
					불허용도	기정	•타 공동관의 전층권장용도
						변경	•타 공동관의 전층권장용도로 명기된 주용도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70% 이하	
					높 이	7층 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⑥ 전기재료관, 전기조명관(변경있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전기재료관 전기조명관	용도	권장 용도	기정	<p>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선, 변압기, 스위치, 발전기, 분전반, 퓨즈, 정류기, 축전지, 전동기 등</li> <li>•전기조명기구(특수조명, 산업용조명, 가로등, 주택조명, 전구 및 형광램프 등)</li> </ul> <p>※ 단, 상기 시설의 총면적은 건축연면적의 50%이상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기 취급품목업종의 부속용도 (창고시설, 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층 권장</li> <li>•지 상 층 중 조합 공동 소유의 코너 및 변(Side) 쪽 공간 권장</li> </ul>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문구, 의약품)</li> <li>•휴게음식점</li> <li>•이용원, 미용원, 세탁소</li> <li>•의원, 치과의원, 한의원</li> </ul>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음식점</li> <li>•금융업소 (1개소에 한함)</li> </ul>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장중 극장, 영화관</li> <li>•집회장중 예식장</li> <li>•전시장</li> </ul> <p>4. 전기조명관의 업무동은 전층권장 사항으로 제1호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2호의 금융업소와 사무소</p> <p>※ 단, 상기 각호의 총 시설면적은 건축연면적의 8%이내 허용하며 단 전기조명관은 건축연면적의 5%이내 허용</p>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전기재료관 전기조명관	용도	권장 용도	변경	<input type="checkbox"/> 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 전선, 변압기, 스위치, 발전기, 분전반, 퓨즈, 정류기, 축전지, 전동기 등 - 전기조명기구(특수조명, 산업용조명, 가로등, 주택조명, 전구 및 형광램프 등) ※ 단, 상기시설의 총면적은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50%초과 설치 <input type="checkbox"/> 부속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자목 중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목 중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예식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라목, 마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가목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 나목의 1)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 단, 상기시설은 2층 이상에 설치		
					<input type="checkbox"/> 편의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목욕장 제외), 라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하목(금융업소), 너목 •전기조명관의 업무동은 전층권장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자목,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의 1) ※ 단, 상기 각호의 총 시설면적은 업무동을 포함한 건축 연면적의 8%이내 허용		
					불허용도	기정	•타 공동관의 전층권장용도
						변경	•타 공동관의 전층권장용도로 명기된 주용도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70% 이하
					높 이		7층 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 4) 물류단지용지(변경있음)

##### ① 일반물류(변경있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일반물류 ①~⑦	용도	권장 용도	기정	다음 품목을 취급하는 창고 •식품, 생필품, 잡화, 주류 등 •화물운송 및 알선 •상기 취급품목업종의 부속용도 (사무소, 판매시설) ※ 단, 부속용도는 건축연면적의 40%미만
				변경	<input type="checkbox"/> 주용도 •다음 품목을 취급하는 창고 - 식품, 생필품, 잡화, 주류 등 - 화물운송 및 알선 ※ 단, 상기 시설의 총면적은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60%초과 설치 <input type="checkbox"/> 부속용도 •주용도에서 취급하는 품목과 관련된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자목 중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목 중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1) 사무소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170% 이하	
			건폐율	70% 이하	
			높 이	6층 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 ② 철강물류(변경있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철강물류 ①~③	용도	권장 용도	기정	다음 품목을 취급하는 창고 •강판, 강관, 형강, 봉강, 강괴, 기타 철강류 •건축자재 •상기 취급품목업종의 부속용도 (사무소, 판매시설) ※ 단, 부속용도는 건축연면적의 40%미만
				변경	<input type="checkbox"/> 주용도 •다음 품목을 취급하는 창고 - 강판, 강관, 형강, 봉강, 강괴, 기타 철강류 - 건축자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input type="checkbox"/> 부속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자목 중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목 중 사무소 •주용도에서 취급하는 품목과 관련된 판매시설 •식품, 생필품, 잡화, 주류, 공산품, 농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창고 ※ 단, 부속용도는 건축연면적의 40%미만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170% 이하	
			건폐율	70% 이하	
			높 이	6층 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③ 우편기계화물류(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우편기계화 물류	용 도	지정용도	•우편집중국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170% 이하
		건폐율		50% 이하
		높 이		6층 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5) 지원시설용지(변경있음)

① 업무편익시설(변경있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업무편익 시설 ②~⑤, ⑦, ⑨-1,2	용도	기정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권장 용도 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나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620% 이하
		건폐율		70% 이하
		높 이		10층 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업무편의 시설 ⑩-1	용도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li> <li>※ 단, 상기시설의 총면적은 건축연면적의 50%이상 설치</li> <li>•근린생활시설</li> <li>※ 휴게음식점은 건축연면적의 8%이내 허용</li> </ul>
				변경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금융업소, 골프연습장, 격리병원,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li> </ul>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50% 이하	
		높 이	7층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② 업무편의시설(호텔)(변경있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업무편의 시설 ⑥	용도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박시설(호텔)</li> </ul>
				변경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장용도 이외의 용도</li> </ul>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70% 이하	
		높 이	18층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③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변경있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패션디자인 개발지원센터	용도	권장 용도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및 그 부대시설</li> <li>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li> </ul>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및 그 부대시설</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자목</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아목, 하목</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 (예식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라목, 마목</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 나목의 1)</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장용도 이외의 용도</li> </ul>	
			용적률	160% 이하	
		건폐율	70% 이하		
		높 이	3층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④ 관리사무소(변경있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관리사무소	용도	권장 용도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li> </ul>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4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li>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 나목의 1)</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장용도 이외의 용도</li> </ul>	
		용적률	290% 이하		
		건폐율	60% 이하		
		높 이	5층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⑤ 소방·경찰파출소(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소방· 경찰파출소	용 도	지정용도	•소방·경찰파출소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60% 이하	
		건폐율	30% 이하	
		높 이	2층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⑥ 변전소(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변전소	용 도	지정용도	•변전소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50% 이하	
		건폐율	30% 이하	
		높 이	3층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⑦ 주유소(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업무편의 시설①, ⑨-3	용 도	지정용도	•주유소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60% 이하	
		건폐율	40% 이하	
		높 이	2층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⑧ 패션지원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패션지원 시설	용 도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4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li>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li>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li> </ul>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160% 이하
		건폐율		70% 이하
		높 이		3층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6) 공공기타용지(변경없음)

①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주차장 ①~④, ⑦~⑨	용 도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름	
		건폐율		
		높 이		
		색 채		
-	주차장 ⑤	용 도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제조업소, 관리사무소에 한함)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름 ※ 단, 부대시설에 한해서는 높이를 2층 이하	
		건폐율		
		높 이		
		색 채		

II.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